

의안번호	2217018
의 퇴 인	정진욱 의원
회 답 일	2026. 3. 31.
추계번호	26A1061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6조제1항 (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)	○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함 * 창업기획자의 투자 대상 확대 - (현행) 초기창업기업 - (개정안)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,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초기창업기업에 후속 투자하는 경우로서 업력 5년 이내인 창업기업 등 추가	의무규정
2	안 제38조의2 (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)	○ 벤처투자회사는 「상법」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- 1. 벤처투자회사 및 그 소속 임직원이 합하여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- 2.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-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※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를 말함(안 제2조제10호의2)	재량규정
3	안 제71조제4항 (기금의 투자 등)	○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, 개인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음 * 출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- (현행)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 - (개정안) 지방자치단체 추가 * 출자 대상 조합에 개인투자조합을 추가 - (현행) 벤처투자조합, 모태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 - (개정안) 개인투자조합(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 한정한다) 추가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80조제1항(과태료)	○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가 아닌 자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6조제1항 (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)	·미대상 － 창업기획자의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2	안 제38조의2 (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)	·미대상 －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3	안 제71조제1항 (기금의 투자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4	안 제80조제1항(과태료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합의 출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출자 대상에 개인투자조합¹⁾을 추가하는 한편,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가 아닌 자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- 개정안은 창업기획자의 투자대상을 확대하고,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

1)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 한정함

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

□ 개정안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와 재정수입의 증가 요인이 모두 있으며, 이를 조문 및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

○ **재정지출의 증가**는 지방자치단체가 벤처투자조합, 개인투자조합 등에 출자함에 따라 발생

－ **안 제71조제1항**은 출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출자 대상 조합에 개인투자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, 출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됨에 따라 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통한 출자 가능성이 있고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 재정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
○ **재정수입의 증가**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발생

－ **안 제80조제1항**은 과태료 부과 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,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징수할 경우 재정수입(세외수입)이 증가할 수 있음

□ 개정안에 따른 순 재정부담은 재정지출의 증가액에서 재정수입의 증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, 벤처투자조합,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규모와 법률상 의무행위 위반에 따른 추가 과태료 부과액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어 구체적인 금액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○ **지방자치단체의 조합 출자에 따른 지출액**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대한 출자 여부, 출자 규모 및 출자 재원 등을 가정하여야 하나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는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○ **과태료 징수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액**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금전 제재를 받게 될 의무 위반행위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을 바탕으로 산출될 것이나, 현재는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므로 구체적인 재정수입 증가 규모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이에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합의 출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출자 대상에 개인투자조합을 추가하는 한편, 과

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(순 재정부담)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주계세제총괄과	장설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654	shjang@assembly.go.kr